

##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제한(총액) /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사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입찰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음, 사제, 증여, 취업제공(인인적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kangwo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33-250-7016)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플랫폼(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설, 계약방법 등): 강원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장민진 ☎ 033-250-7053 201733@kangwon.ac.kr  
- 주소: 우)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대학본부 2층 재무과
- **수요부서: 불일 물품 목록의 담당자 및 연락처 참조**  
- 물품규격에 관한 설명은 규격서에 기재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8K01623115-000
- 수요물지구분: 물품
- 공고명: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일반, 교체) 자연과학대학 분석저울 등 16종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분석용전자저울 등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3,032,5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39,120,5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고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을만 고려한 투찰로 인해 계약 불이행(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입찰)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오니, 입찰 전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7/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5 10:00
- 개찰일시: 2026/07/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격검토확인서 및 규격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요부서 검토 결과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플랫폼(☎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요역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분석용전자저울(세부품명번호: 411151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질소제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g.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를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을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4. 공지사항

○ 채권안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안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안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안도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안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안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안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안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안도 승인규정' 입력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등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불이행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제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기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기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접이행의무 협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안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압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업무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강원대학교 재무관 귀하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금지 의무 준수 협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업무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업무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강원대학교 재무관 귀하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기목의 사유로 입찰참

- 가자적 제한을 받은 재(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자서 및 현금제출 불가)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시기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경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경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가능한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정하한(단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나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원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나라장터에 전송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규격서 확인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수요기관 의 기기사양에 대한 물품 적합 여부에 대한 규격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검토확인서는 수요부서 교수 또는 담당자의 규격 적합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요부서 검토 결과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시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시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무효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원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허수급인 또는 지체·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9 -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취지, 부정당업 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허창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입찰경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예)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시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계약직접생산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대학교 재무관

- 11 -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기금지 시 「하도급대금을 수반하기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인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경행된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인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0. 부당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중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강원대학교에 납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중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인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강원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3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격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절차를 훼손한 행위

##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원대 청렴신고센터(☎033-250-7016)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대 청렴신고센터(☎033-250-7016) 및 강원대 홈페이지([www.kangwon.ac.kr](http://www.kangwon.ac.kr))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사랑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 · 이행 등의 과정(중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강원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순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격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절차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순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조

20

서약자

(인)

강원대학교 재무관 귀하

- 1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대학교 재무관 귀하**